

# 이사회 운영규정

팬오션 주식회사

# 이사회 운영 규정

制定 2004.11.08  
改定 2006.01.09  
改定 2007.08.17  
改定 2008.03.28  
改定 2010.03.29  
改定 2011.01.17  
改定 2011.02.17  
改定 2011.03.28  
改定 2012.03.29  
改定 2016.01.08  
改定 2022.05.09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1)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2)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을 감독한다. (개정 2022.05.09)
- 3)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(신설 2022.05.09)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2.05.09)

### 제5조 (의장)

- 1)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2)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의장의 유고시에는 사내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22.05.09)
- 3) 의장의 임기는 이사임기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22.05.09)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6조 (종류)

- 1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2) 정기이사회는 매 3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. (개정 2022.05.09)
- 3)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7조 (소집)

- 1)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(개정 2016.01.08)
- 2)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3)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(신설 2016.01.08)

### 제8조 (결의방법)

- 1)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 (개정 2022.05.09)
- 2)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

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(개정 2012.03.29)

- 3)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4)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
**제9조 (결의할 사항)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**

- 1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(개정 2012.03.29)
  - 가. 주주총회의 소집
  - 나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다.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- 라.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
  - 마. 자본의 감소 (신설 2022.05.09)
  - 바.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분할·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 (신설 2022.05.09)
  - 사.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(신설 2022.05.09)
  - 아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안
- 2) 자금조달 및 감자에 관한 사항 (개정 2010.03.29)
  - 가. 신주(종류주식 포함)의 발행 및 감자에 관한 사항 (개정 2022.05.09)
  - 나. 자기자본 5%이상 자금조달
  - 다. 사채의 발행 (단, 발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발행 위임) (개정 2022.05.09)
- 3)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(개정 2012.03.29)
  - 가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- 나.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(사업계획 시) (신설 2022.05.09)
  - 다. 연말 결산,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(개정 2022.05.09)
  - 라.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
  - 마. 회사경영의 주요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
- 4) 자산에 관한 사항 (개정 2016.01.08)
  - 가. 연간 투자 계획
  - 나. 자기자본 3%이상의 투자를 요하는 선박의 취득 및 처분 (연간 투자계획 미반영분)

- 다. 나목의 선박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장기계약의 체결 (개정 2022.05.09)
- 라. 선박을 제외한 건당 100억원(또는 자산총액 2.5%)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 및 처분 (단, 자금 운용 위한 금융상품 가입은 제외) (개정 2022.05.09)
- 5) 지분투자(출자) 및 처분 (개정 2016.01.08)
  - 가. 신규법인 설립 및 청산에 관한 사항 (선박금융 관련 SPC는 제외)
  - 나. 100억원(또는 자기자본 2.5%) 이상의 타 법인 지분 취득 및 처분
  - 다. 투자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
    - Joint Venture, 합작투자 계약, 주주간 협약서, MOU (투자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한함) 등
  - 라. 종속회사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
    - 합병, 분할,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이전, 영업양수도 등
- 6) 전략적 제휴 (계약) (개정 2016.01.08)
  - 가. License 계약, 기술도입 계약, 지적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
  - 나. 기타 계약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한 주요 계약에 관한 사항
- 7) 자기자본 2.5%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(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) 및 채무보증(단 이행보증, 납세보증은 제외한다)에 관한 사항 (개정 2011.01.17)
- 8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사항 (개정 2012.03.29)
- 9) 중요한 인사정책 및 상벌에 관한 사항
- 10)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
- 11)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
- 12) 중요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13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14)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16.01.08)
  - 가.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 (개정 2022.05.09)
  - 나.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, 운영 및 폐지
  - 다.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15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 회사간 중대한 거래의 승인 (개정 2016.01.08)
- 16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(개정 2016.01.08)
- 17) 국내외 지점, 출장소 및 사무소 설치·이전 또는 폐쇄 (신설 2022.05.09)
- 18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(신설 2022.05.09)

- 19)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(신설 2022.05.09)
- 20) 5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결정 (신설 2022.05.09)
- 21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(개정 2010.03.29)

**제10조 (보고할 사항) 이사회에서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**

- 1)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)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
- 3) 선박을 제외한 건당 30억원 이상 100억원(또는 자산총액 2.5%) 미만의 비유동자산의 취득 및 처분 (단, 자금 운용 위한 금융상품 가입은 제외) (개정 2022.05.09)
- 4) 건당 30억원 이상 100억원(또는 자기자본 2.5%) 미만의 타 법인 지분의 취득 및 처분 (신설 2016.01.08)
- 5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(신설 2022.05.09)
- 6) 준법통제기준 유효성평가결과 (신설 2022.05.09)
- 7) 자율준수프로그램 감시 및 감사 (신설 2022.05.09)
- 8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**제11조 (관계인의 출석)**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이사에 대한 직무수행감독권) (개정 2022.05.09)**

- 1)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 (개정 2022.05.09)
- 2)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수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(개정 2012.03.29)

**제13조 (의사록)**

- 1)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2)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

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# **제14조 (간사)**

- 1) 이사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- 2)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#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1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사회규정(1982년 10월 1일 제정)은 이를 폐지한다.

#### **부 칙 (2006.01.09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07.08.17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08.03.28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10.03.29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11.01.17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11.02.17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11.03.28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12.03.29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16.01.08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22.05.09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